

#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

< '26. 5. 8. 관세청 >

## □ 배경

- 중동상황으로 국제 운임이 폭등함에 따라, 운임 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비 물가안정 지원
  -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 이용시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

## □ 운임 특례 적용 대상

- [대상 업체]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해당 수입물품(HS4 단위 기준)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('25.3월~'26.2월 내)
- [적용 기준]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
  -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
  - ② 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의 경우
  - ③ 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,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
- [적용 범위] 운임, 보험료, 운송 관련 비용
- [수입물품 적출국] 중동지역 이하 20개국 ※ 가나다순

레바논, 리비아, 모로코, 모리타니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수단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알제리, 예멘, 오만, 요르단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카타르, 쿠웨이트, 튀니지

- [적용 물품] 제한 없음

## □ 적용 방법

- [지원신청] 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\*,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

\*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① 운임 or 운송관련비용 or 보험료 중 해당 사항을 선택 하고 반드시 ② '기타' 선택 후 사유로 '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' 기재

-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

※ 경정 시, 정정 사유(99) "기타(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)" 기재 필요 (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 시에도 동일)

### <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>

- ◇ (대상확인) 기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내역(수입신고번호 등)
- ◇ (실제운임) 실제 지급한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
- ◇ (통상운임) 지원 항목별 계산 내역
- ◇ (운송증빙) [적용 기준] 해당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※ [예시] ①의 경우, 우회항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 서류 등  
②의 경우, 선사가 화주에게 화물 위치 정보를 공유한 보고서 등  
③의 경우, 중동 상황 발발 이전에 체결한 선박 운송 계약서 등

- [지원신청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]

- (확정신고)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
- (경정청구)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

## □ 시행 시기

- 26년 5월 8일부터 시행(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 시)

※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적용 종료 시한 별도 공지 예정

-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

## ※ 통상운임 등 산정 기준

◇ 중동상황 발발 이전 **1년간**(25.3월~26.2월)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, 적용 통일성을 위해 업체·상황별 특수성 반영은 가급적 지양

### □ 운임

○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 기준, 선종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운임지수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

※ 운임지수가 없는 선종의 경우 수출국(적출국)을 운항하는 통상적인 운임 적용

#### < 적용 예시 - 유조선의 경우 >

- 1년 평균 WS : 86.49 // 1년 평균 Flat Rate : 22\$/MT // 물량 : 50,000 MT

⇒  $86.49/100 \times 22 \times 50,000 = 951,390$  \$

### □ 운송 관련 비용

○ 당사가 동일 수입물품(HS4단위)에 대해 부담한 비용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(체선료 등)

#### < 적용 예시 >

- 1년 평균 체선료율(체선 발생 건 기준) : 60,000\$/일 // 실제 체선일수 : 10일

⇒  $60,000 \times 10 = 600,000$  \$

### □ 보험료

○ 당사가 동일 수입물품(HS4단위)에 대해 부담한 평균 보험료율 적용

#### < 적용 예시 >

- 1년 평균 보험료율(발생 건 기준) : 0.025% // 실제 보험가액 : 70,000,000 \$

⇒  $0.025/100 \times 70,000,000 = 17,500$  \$

#### < CIF 등 운임 포함 인도조건의 경우 >

- '실제지급가격'과 '운임, 운송관련 비용, 보험료'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 가능한 경우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 기준 적용 가능